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9. 17 선고 2017가단110296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 주식회사

2. D

3. E

4. F

변론 종결 2019. 8. 13

판결 선고 2019. 9. 17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,426,302,430원 및 그 중 1,518,287,864원에 대하여 2017. 8. 3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가. 피고 1: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나. 피고 2: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다. 피고 3: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라. 피고 4: 공시송달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3. 피고 C 주식회사의 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 C 주식회사(이하 'C'이라 한다)는, 1997. 12. 16. 해산되고 2000. 12.

17.자로청산종결되었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.

상법 제520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종결의등기를 하였더라도

채권채무가 남아 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아니하고 그 한도에있어서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을

가진다(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다40714, 40721판결 등 참조),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

없다.

판사 김상근

별지